



서울동부지방법원

판 결

사 건 2025고정145 저작권법위반
피 고 인 A
검 사 장아량(기소), 김채연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(국선)
판 결 선 고 2025. 6. 10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. 9. 7. 13:10: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, C호에서, "(IPV4 1 생략)" IP address로 인터넷에 접속한 뒤,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



하여 피해자 (주)D가 저작권을 보유한 "E" 영화 영상을 복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F 작성의 진술서

1. (주)D 작성의 고소장

1. 각 수사보고서

1. 저작권등록증

1. 통신이용자 정보자료 제공요청 회신의 건

1. 토렌트 프로그램 업로드 화면 출력물

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. 피고인은 ① 수사기관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IP주소를 조회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, ② 피고인의 주소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와 다르며, ③ 피고인의 IP주소는 고소장에 기재된 IP주소와 다르고,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. 살피건대, ① 고소장에 기재된 IP주소는 '(IPV4 1 생략)'이고 이를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진 점(증거 순번 7번 '통신이용자 정보자료 제공요청 회신의 건'에 사용IP: (IPV4 1 생략)의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고객명·연락처·주민번호·주소가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, 증거 순번 8, 9번 각 수사보고서상의 '(IPV4 2 생략)'은 '(IPV4 1 생략)'의 단순 오기임이 명백하다), ② 고소장에 기재된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저작권침해 IP주소만으로 그 장소를 추정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, 위 IP주소에 대한



네트워크 할당기관인 (주)G는 위 IP가 유동IP로서 범행일자 당시를 기준으로 가입자가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해준 점, ③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물을 많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였는데,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는 통상적으로 위 프로그램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면 동시에 업로드되는 것을 알고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,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

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(벌금형 선택)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곽윤경 _____